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(이용계약)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제2조(계약목적)
센터와 이용자(보호자)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3조(계약기간)

1.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(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2.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
3.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(보호자)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4조(계약의 해제)

1.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
2.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 ①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“급여 외 행위”요청이 있는 경우
   ②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  ④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 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5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1.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2.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한다.
3.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’에 의한다.

4. 방문요양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’ 안내에 의한다.

제6조(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

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

⑤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⑥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②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

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